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작성 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 요〉

□ 주 제 :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작성 방안

□ 일 시 : 2013. 10. 7(월) 15:30~18:00

□ 장 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0층 대강당

□ 주 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프로그램 순서(안)

15:30~15:40 개회사

▶ 개회사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15:40~17:40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 사회자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

▶ 발표자 김종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작성방안」

▶ 토론자 김상노 국가회계기준센터 부장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이원희 환경대학교 교수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

(가나다 순)

17:40~18:0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18:00 폐회

목 차

①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도입의 배경과 의의	1
② 국유재산특례지출의 개념 및 특성	2
③ 국유재산특례지출의 현황 및 시사점	4
④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편제	6
※ 부록: 공청회 참고자료	7
I. 국유재산특례지출 현황	11
II.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편제	22

표 목차

<표 1> 재산유형별·특례유형별 재정지원액	11
<표 2> 재산 소관 부처별 재정지원액(2011년 기준)	12
<표 3> 재산 소관 부처별 재정지원액(2012년 기준)	13
<표 4> 특례지출 대상자별 재정지원액	16
<표 5> 분야·부문 분류체계 및 코드 설정	18
<표 6> 분야·부문별 재정지원액 현황	20
<표 7> 부처별 특례 지출 실적(2012년)	24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작성 방안

1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도입의 배경과 의의

가. 국유재산 관리의 강화

- 국유재산의 통합관리를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안이 2011년 3월 임시 국회(3.11일)에서 통과
 - 총괄청(기획재정부)이 국유재산을 통합하여 관리하며, 각 부처는 필요한 재산을 승인받아 사용하게 됨
 - 정부는 매년 국유재산특례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
 - 이와 함께,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하여 각 부처의 청사·관사 등 공용 재산 취득사업을 통합관리
- 아울러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제정됨으로써 국유재산의 양여, 무상사용 등 개별법에 산재한 특례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음

나. 재정의 범주 확장 및 투명성 제고

- 국유재산특례지출제한법 제10조 1항에서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국가예산의 범주를 확장
- 이는 일반 세출예산서와 더불어 2006년의 국가재정법에서 조세지출예산서를 제출토록 한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아래와 같은 의의가 있음
 - ① 조세지출에 이어 국유재산특례지출을 포함토록 하여 국가예산의 범주를 확장함으로써 재정의 전반적 투명성을 제고

- ※ 국유재산특례는 조세지출과 마찬가지로 국가재정 수입의 감소를 수반하는 사실상의 지출에 해당
- ② 특히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작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발생주의 회계 기준에 따른 재정통계의 투명성과 정확성 제고 역시 중요

② 국유재산특례지출의 개념 및 특성

- (개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또는 양여를 의미하며, 국유재산특례로 국가가 징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사실상의 국가 지출로 간주
- (국회 심의 여부)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국회 제출 용도는 국회의 심의·승인이 아니며, 다만 조세지출예산서와 더불어 세출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참고하기 위한 것임
 - 국유재산특례지출은 개별 특례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므로 당해 근거법을 우선 수정하지 아니하고 예산서 내역에 대한 직접적인 수정을 하기 어려움. 다만 세출예산서의 심의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 됨
- (발생주의 회계기준과의 부합)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내용은 국가의 발생주의 회계기준, 특히 국유재산이 자산으로 등재되는 국가 결산서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할 필요
 - 특례지출 규모가 당해 국유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
- 편제 (분류기준 설정) :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능별 분류의 필요성
 - 총괄적인 자원배분의 모습 파악을 위해 일반재정, 조세지출 등 다른 예산서와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제시할 필요
 - 직접 재정투입, 조세감면, 국유재산특례 등을 통한 총체적 자원투입이

정책영역·사업 간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시
하여 지원의 효과를 알 수 있도록 하며,

- 기능별 분류는 지원 대상의 성격을 감안하므로 수혜자 또는 수혜계층 간
형평성을 파악할 수 있음

※ 특례유형, 재산유형, 소관부처 등 다른 분류기준도 함께 적용

- (특례지출 규모 산정방식) 매년 작성되는 국유재산특례종합계획을 통하여
확정된 내역에 대해, 재정정보종합시스템(dBrain) 등에 수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개별 특례지출의 규모를 산정하여 예산서 편제에 따라 취합

③ 국유재산특례지출의 현황 및 시사점

가. 재산유형별·특례지출 유형별 현황

<재산유형별·특례유형별 재정지원액>

(단위: 백만원, %)

특례 유형 재산 유형	연도	사용료 감면			양여	합 계
		사용료 감경	사용료 면제	소계		
토지	2011	41,562	323,062	364,624	39,321	403,945
	2012	68,742	404,009	472,750	1,810,901	2,283,651
건물	2011	3,474	103,969	107,443	5,082	112,525
	2012	4,106	83,681	87,787	807,243	895,029
기타	2011	266	36,538	36,804	3,985	40,789
	2012	0	47,351	47,351	72,601	119,952
합계	2011	45,302	463,569	508,871	48,388	557,259
		(8.1)	(83.2)	(91.3)	(8.7)	(100)
	2012	72,848	535,041	607,888	2,690,744	3,298,633
		(2.2)	(16.2)	(18.4)	(81.6)	(100)

주: 1. () 안은 각 연도 재정지원액 합계액 대비 비중

2. 2012년도 양여금액이 급증한 데에는 '서울대법인화'에 따른 양여액 2,617.1억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 특례지출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료 면제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여는 발생시 자산가액이 전액 반영되므로 당해연도에만 지출규모가 예외적으로 급증

나. 대상자별 현황

< 특례지출 대상자별 재정지원액 >

(단위: 백만원, %)

대상자	사용료 감경		사용료 면제		양여		합계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공공 부문	지자체	0	1	128	117	416	4,442	543	(0.1)	4,560	(0.8)
	공공법인	999	20,281	430,927	474,409	13,655	2,905	445,581	(80.0)	497,595	(87.0)
	소계	999	20,282	431,055	474,526	14,070	7,347	446,125	(80.1)	502,154	(87.8)
민간 부문	법인	41,842	48,296	32,257	16,097	34,318	0	108,417	(19.5)	64,392	(11.3)
	영리법인	41,499	48,056	16,777	12,942	0	0	58,276	(10.5)	60,998	(10.7)
	비영리법인	343	239	15,480	3,155	34,318	0	50,142	(9.0)	3,394	(0.6)
	개인	2,459	4,270	257	1,144	0	0	2,717	(0.5)	5,414	(0.9)
	소계	44,302	52,566	32,514	17,240	34,318	0	111,134	(19.9)	69,806	(12.2)
합계	45,301	72,848	463,569	491,766	48,388	7,347	557,259	(100.0)	571,961	(100.0)	

주: () 안은 각 연도 재정지원액 합계액 대비 비중

- 특례지출 대상자를 공공·민간부문으로 분류하면, 대부분의 특례지출은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민간대상 지원이 작으므로 지원의 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의 가능성이 낮음

다. 기능별 분류

- 국가재정운용계획, 연간 세출예산서, 조세지출예산서 등 타 예산서와의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 195개의 전 특례지출별로 근거법 및 사업의 내역을 파악하여 타 예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능별 분류기준에 따라 16분야·69부문에 맞도록 분류하여 제시

<기능별 국유재산특례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 분야	사용료 감면		양여		합계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일반공공행정	12,595	16,455	0	0	12,595	2.3	16,455	2.7
공공질서및안전	13,553	13,413	0	0	13,553	2.4	13,413	2.2
통일외교	780	3,801	851	0	1,631	0.3	3,801	0.6
국방	12	6,482	0	0	12	0.0	6,482	1.1
교육	39,911	34,546	0	0	39,911	7.2	34,546	5.7
문화및관광	10,818	9,833	72	0	10,890	2.0	9,833	1.6
환경	1,886	356	0	0	1,886	0.3	356	0.1
사회복지	27,925	42,526	0	0	27,925	5.0	42,526	7.0
농림수산	15,715	19,496	13,655	2,261	29,369	5.3	21,757	3.6
보건	30,642	36,594	0	0	30,642	5.5	36,594	6.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8,814	68,308	0	0	58,814	10.6	68,308	11.3
교통및물류	287,742	337,017	33,467	0	321,209	57.6	337,017	55.7
통신	10	0	0	0	10	0.0	0	0.0
국토및지역개발	81	5	343	5,184	425	0.1	5,189	0.9
과학기술	8,387	8,573	0	0	8,387	1.5	8,573	1.4
합계	508,871	597,405	48,388	7,445	557,259	100.0	604,850	100.0

주: 현재 표에 제시된 2012년 실적은 서울대에 대한 특례지출을 제외한 결과임. 서울대에 이루어진 재정지원은 사용료 감면을 통해 약 34억원, 양여를 통해 2조 6,170억원이 이루어짐.

4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편제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및 2011~2012년도 현황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편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

I.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제도의 개요

1.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제도의 의의
2. 국유재산특례지출의 정의
3. 국유재산특례지출의 범위
4. 국유재산특례지출의 유형
5.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제도의 특성

II.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1.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작성목적
2. 국유재산특례지출규모 산정방법

III. 국유재산특례지출 현황 및 분석

1. 국유재산특례지출 현황
2. 유형별 국유재산특례지출 내역
3. 기능별(예산분류기준별) 국유재산특례지출 내역

IV. 국유재산특례지출 유형별 내역

V. 국유재산특례지출 기능별 내역

VI. 국유재산특례 규정의 정비

1. 국유재산특례 규정의 정비방안
2. 국유재산특례 규정의 신설·폐지 내역

<별첨>

1. 재산 소관 부처별 국유재산특례지출 내역
2. 수혜대상별 국유재산특례지출 내역
3. 최근 5년간 미운용 국유재산특례 규정 내역

부 록

공청회 참고자료

- I. 국유재산특례지출 현황
- II.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편제



목 차

I. 국유재산특례지출 현황	11
1. 특례지출 유형별 현황	11
2. 재산 소관 부처별 현황	12
3. 대상자별 현황	14
4. 기능별 현황	17
II.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편제	22
1. 편제 설정	22
2. 예산서 편제(안)	26

I. 국유재산특례지출 현황

1. 특례지출 유형별 현황

<표 1> 재산유형별 · 특례유형별 재정지원액

(단위: 백만원, %)

재산유형 \ 특례 유형	연도	사용료 감면			양여	합 계
		사용료 감경	사용료 면제	소계		
토지	2011	41,562	323,062	364,624	39,321	403,945
	2012	68,742	404,009	472,750	1,810,901	2,283,651
건물	2011	3,474	103,969	107,443	5,082	112,525
	2012	4,106	83,681	87,787	807,243	895,029
기타	2011	266	36,538	36,804	3,985	40,789
	2012	0	47,351	47,351	72,601	119,952
합계	2011	45,302	463,569	508,871	48,388	557,259
		(8.1)	(83.2)	(91.3)	(8.7)	(100)
	2012	72,848	535,041	607,888	2,690,744	3,298,633
		(2.2)	(16.2)	(18.4)	(81.6)	(100)

주: 1. () 안은 각 연도 재정지원액 합계액 대비 비중

2. 2012년도 양여금액이 급증한 데에는 ‘서울대법인화’에 따른 양여액 2,617.1억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는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에서 특례지출을 유형별로 제시하도록 요구하므로 우선 살펴보기로 함
- 법에서 요구되는 유형분류는 특례유형이라고 해석되며, 이에는 사용료 감경, 사용료 면제, 양여가 있음
 - 규모 측면에서는 사용료 면제가 가장 크며,
 - 양여의 경우 특성상 사용료의 감면보다 건당 규모는 크나, 건수가 적어서 총규모는 사용료 면제보다 전반적으로 작음. 다만, 2012년과 같이 예외적으로 큰 규모의 양여가 발생하는 연도에는 큰 수치를 기록
- 아울러 재산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토지, 건물, 기타로 분류가 가능하며, 토지의 사용 또는 양여에 대한 특례지출의 규모가 가장 큼

2. 재산 소관 부처별 현황

<표 2> 재산 소관 부처별 재정지원액(2011년 기준)

(단위: 백만원)

부 처	사용료 감경	사용료 면제	양여	합계
경 찰 청	0	13,362	0	13,362
고 용 노 동 부	0	22,370	0	22,370
교육과학기술부	1,958	48,127	0	50,085
국 가 보 훈 처	0	3,353	0	3,353
국 무 총 리 실	0	9,944	0	9,944
국 방 부	0	12	0	12
국 토 해 양 부	42	294,834	33,467	328,343
국 회	0	344	0	344
기 상 청	0	73	0	73
기 획 재 정 부	17	787	343	1,147
농림수산식품부	0	84	13,727	13,811
농 촌 진 흥 청	0	4,540	0	4,540
대 법 원	0	31	0	31
문 화 재 청	0	777	0	777
문화체육관광부	0	9,888	0	9,888
법 무 부	0	170	0	170
보 건 복 지 부	0	32,278	0	32,278
산 립 청	7,489	3,686	0	11,175
외 교 통 상 부	0	780	0	780
지 식 경 제 부	35,720	16,323	0	52,043
통 일 부	0	40	851	891
행 정 안 전 부	0	613	0	613
환 경 부	75	1,153	0	1,229
합 계	45,301	463,569	48,388	557,259

<표 3> 재산 소관 부처별 재정지원액(2012년 기준)

(단위: 백만원)

부 처	사용료 감경	사용료 면제	양여	합계
경 찰 청	0	15,076	0	15,076
고 용 노 동 부	0	27,163	0	27,163
교 육 부	1,611	68,902	2,683,397	2,753,911
국 가 보 훈 처	0	11,931	0	11,931
국 무 조 정 실	0	9,944	0	9,944
국 토 교 통 부	41	268,635	0	268,676
국 회	0	220	0	220
기 상 청	0	101	0	101
기 획 재 정 부	0	1,022	908	1,929
농 촌 진 흥 청	0	5,136	0	5,136
문 화 재 청	0	1,379	0	1,379
문화체육관광부	0	8,437	0	8,437
미래창조과학부	0	1,974	0	1,974
법 무 부	0	306	0	306
보 건 복 지 부	20,234	17,946	0	38,180
산 림 청	12,856	1,505	4,179	18,540
산업통상자원부	38,040	12,772	0	50,812
안 전 행 정 부	0	906	0	906
외 교 부	0	4,732	0	4,732
통 일 부	0	40	0	40
해 양 수 산 부	0	75,917	2,261	78,178
환 경 부	66	999	0	1,064
합 계	72,848	535,041	2,690,744	3,298,633

주: 1. 재산 소관 부처 구분은 2013년 기준으로 하였음.

2. 교육부의 양여액이 급증한 데에는 '서울대법인화'에 따른 양여액 2,617.1억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일반 정부 문서, 특히 세출예산서, 조세지출예산서 등 타 예산서와 같이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우선 부처별 분류가 중요하며, 소관 부처는 국유재산특례의 경우 당해 재산 소관 및 당해 법률 소관으로 구분 가능

우선 재산 소관 분류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지출의 현황을 여기서 제시하나, 큰 의미가 없으므로 예산서에서는 참고자료로 간략히 제시하고, 예산서 편제에서 부처 분류는 법률 소관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예상되는 바와 같이 국유재산은 성격상 대부분 국토교통부(국토해양부) 소관이며, 이는 2011년과 2012년 재산소관별 특례지출 현황을 제시한 위의 표에서도 확인 가능
-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제출 목적은 국가재원의 정책·사업·수혜계층 간 배분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산소관보다는 법률 소관 위주로 편제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
 - 이는 국유재산특례를 지정한 법률의 소관 부처가 정책·사업·수혜계층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임

3. 대상자별 현황

□ 대상자 구분 방식

- 국유재산특례지출의 수혜자를 분류하는 것은 예산서에서의 핵심 내용인 누구에게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임
- 국유재산특례지출의 수혜자는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공공부문은 다시 지자체와 공공법인, 민간부문은 개인과 법인으로 나눌 수 있음
 - 공공법인은 우선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지방공기업을 포함하도록 하며, 공운법 또는 지방공기업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공공성이 강한 법인(예: KBS, 금융감독원, 국립대학교 등)도 총괄청이 지정하여 포함하도록 함
 - 민간부문의 경우 개인과 법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법인은 다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음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가능
 - 계약 당사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중 가운데 두 자리에 따라 지자체(83), 개인(01~79, 80, 89, 90~99), 영리법인(81, 84, 85, 86, 87, 88), 비영리법인(82)으로 구분할 수 있음

<참고> 사업자 등록번호 구성

※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 [○○○ - ●● - ○○○○○]

첫 세 자리 세무서 관할 '세무서' 표시

가운데 두 자리는 '사업자유형' 표시

가. 개인구분 코드

- (1) 개인과세사업자는 특정 동 구별 없이 01부터 7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 (2) 개인면세사업자는 산업 구분 없이 90부터 9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 (3)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단체(거주자로 보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종교 단체 : 89
- (4)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 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 80

나. 법인성격 코드

- (1) 영리법인의 본점 81, 86, 87, 88
- (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 82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 83
- (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 84
- (5) 영리법인의 지점 : 85

마지막 5자리 중 4자리는 해당 사업자 유형으로 등록된 순서 표시, 끝 1자리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부여된 숫자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표 4> 특례지출 대상자별 재정지원액

(단위: 백만원, %)

대상자	사용료 감경		사용료 면제		양여		합계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공공 부분	지자체	0	1	128	117	416	4,442	543	(0.1)	4,560	(0.8)
	공공법인	999	20,281	430,927	474,409	13,655	2,905	445,581	(80.0)	497,595	(87.0)
	소계	999	20,282	431,055	474,526	14,070	7,347	446,125	(80.1)	502,154	(87.8)
민간 부분	법인	41,842	48,296	32,257	16,097	34,318	0	108,417	(19.5)	64,392	(11.3)
	영리법인	41,499	48,056	16,777	12,942	0	0	58,276	(10.5)	60,998	(10.7)
	비영리법인	343	239	15,480	3,155	34,318	0	50,142	(9.0)	3,394	(0.6)
	개인	2,459	4,270	257	1,144		0	2,717	(0.5)	5,414	(0.9)
	소계	44,302	52,566	32,514	17,240	34,318	0	111,134	(19.9)	69,806	(12.2)
합계	45,301	72,848	463,569	491,766	48,388	7,347	557,259	(100.0)	571,961	(100.0)	

주: () 안은 각 연도 재정지원액 합계액 대비 비중

- 국유재산특례지출의 대상자를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나눈 결과 대부분의 특례지출은 공공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2년간 국유재산특례로 발생한 재정지원액 중 공공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각각 80.1%와 87.8%이며 민간부분은 19.9%와 12.2%였음
 - 공공부분 내에서도 대부분의 재정지원액은 공공법인으로 귀속되고 있는데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4,461억원과 5,022억원으로서 전체 국유재산 특례지출의 80%와 87.8%에 해당됨
 - 민간부분에서는 기업체와 같은 영리법인에 대한 특례지출의 비중이 약 11%로서 다른 민간부분에 비해 높은 수준임
- 그러나 제시된 현황은 2012년도에 이루어진 서울대에 대한 양여를 제외한 것으로서 서울대학교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과 양여를 통해 각각 433억원과 2조 6,834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았음
 - 서울대학교를 공공법인으로 분류하고 재정지원액의 비중을 재계산한 결과 총재정지원액은 5,720억원에서 3조 2,986억원으로 증가하며 그 중 공공부분으로의 재정지원액은 전체 재정지원액의 97.9%인 3조 2,288억원에 달함

- 주요 시사점으로는, 국가 지원의 수혜대상 간 형평성이라는 중요한 기준의 시각에서 볼 때, 국유재산특례지출은 세출예산, 조세지출 등 여타 방식의 지원에 비해 그 영향력과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음
- 총규모 측면에서 매년 총 5,000억~6,000억원으로 세출예산이나 조세지출에 비해 상당히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 그 대상이 대부분(80% 이상) 민간 개인이나 민간 법인이 아닌 공공부문 이므로 수혜대상 계층 간 형평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됨

4. 기능별 현황

-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작성 및 제출의 궁극적 목적은 다른 예산서와의 비교를 통하여 제한된 국가재원의 배분대상 정책분야·수혜자 간 지원에 대하여, 일반세출, 조세지출, 국유재산특례지출 등을 통틀어 포괄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예산서 간에 비교 가능한 분류체계 사용이 일차적 원칙이며, 세출 예산서에 따라 기능별(수혜자별) 분류를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편제에도 도입하기로 하고, 본 절에서는 이러한 분류 작업 과정과 결과를 제시

가. 예산분류

- 국유재산특례지출은 일반 세출예산의 분류와 마찬가지로 지원목적(정책목표)에 따라 구분될 수 있음
- ※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예산분류체계는 분야, 부문, 정책사업까지 고유 정책영역인 프로그램별 분류체계를 채택하고 있음(기존 분류체계 요약 제시 추가 예정)

□ 부문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외교통일, 국방, 교육, 문화체육 관광, 환경, 보건복지노동,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SOC, R&D 등 총16개로 나누어짐

○ 각 부문은 분야와 프로그램으로 세분됨

<표 5> 분야·부문 분류체계 및 코드 설정

16분야 69부문			
010. 일반공공행정	050. 교육	083 공적연금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011. 입법및선거관리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084 보육·가족및여성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012. 국정운영	052 고등교육	085 노인·청소년	120. 교통및물류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53 평생·직업교육	086 노동	121 도로
014. 재정·금융	054 교육일반	087 보훈	122 철도
015. 정부자원관리	060. 문화 및 관광	088 주택	123 도시철도
016. 일반행정	061 문화예술	089 사회복지일반	124 해운·항만
020. 공공질서및안전	062 관광	090. 보건	125 항공·공항
021. 법원및헌재	063 체육	091 보건의료	126 물류등기타
022. 법무및검찰	064 문화재	092 건강보험	130. 통신
023. 경찰	065 문화및관광일반	093 식품의약안전	131 방송통신
024. 해경	070. 환경	100. 농림수산	132 우정
025. 재난관리	071 상하수도·수질	101 농업·농촌	140. 국토및지역개발
030. 통일·외교	072 폐기물	102 임업·산촌	141 수자원
031. 통일	073 대기	103 수산·어촌	142 지역및도시
032. 외교·통상	074 자연	104 식품업	143 산업단지
040. 국방	075 해양환경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50. 과학기술
041. 병력운영	076 환경일반	111 산업금융지원	151 기술개발
042. 전력유지	080. 사회복지	112 산업기술지원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043. 방위력개선	081 기초생활보장	113 무역및투자유치	153 과학기술일반
044. 병무행정	082 취약계층지원	114 산업진흥·고도화	160. 예비비
			161 예비비

자료: 기획재정부,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2013. 4

□ 국유재산특례지출의 근거가 되는 197개 특례 법률을 16개 부문, 69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재정지원액의 기능별 현황을 살펴봄

□ 분류 과정

- 현행 특례지출 근거 법률 및 조항을 소관 부처별로 분류하여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예산 분야와 매칭
- 그러나 부처 간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 부처별-기능별 매칭에 따라 기계적으로 예산을 분류하는 것은 수혜자 기준 예산분류와 충돌
 - 사업 내용과 예산분류 결과가 합리적으로 매칭되지 않는 사례 발생
- 예산 부문으로 특례지출법을 세분할 경우에는 연구진의 자의적 판단 개입이 불가피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원의 재정지출분석센터의 협조를 얻어 특례지출 법률별 예산 분야 및 부문 분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

□ 작업 결과

- 기능별 분류 결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교통 및 물류로서 전체 국유재산특례지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그 외에는 산업·중소, 교육 및 에너지, 사회복지, 보건 분야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
- 그러나 제시된 표는 2012년에 이루어진 서울대에 대한 특례지출을 제외한 결과이며 서울대에 대한 특례지출을 포함할 경우 전체 특례지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교육임(총특례지출의 82%에 해당)
 - 서울대에 이루어진 재정지원은 사용료 감면을 통해 약 34억원, 양여를 통해 2조 6,170억원이 이루어짐

<표 6> 분야·부문별 재정지원액 현황

(단위: 백만원, %)

분야	부문	2011			2012		
		감면	양여	합계	감면	양여	합계
일반공공 행정	국정운영	10,766	0	10,766	14,527	0	14,527
	일반행정	891	0	891	1,412	0	1,412
	입법및선거관리	327	0	327	202	0	202
	지방행정·재정지원	611	0	611	314	0	314
	재정·금융	0	0	0	0	0	0
	정부자원관리	0	0	0	0	0	0
	소계	12,595	0	12,595	16,455	0	16,455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및검찰	201	0	201	370	0	370
	경찰	13,352	0	13,352	13,043	0	13,043
	재난관리	0	0	0	0	0	0
	소계	13,553	0	13,553	13,413	0	13,413
통일·외교	통일	0	851	851	0	0	0
	외교·통상	780	0	780	3,801	0	3,801
	소계	780	851	1,631	3,801	0	3,801
국방	전력유지	0	0	0	0	0	0
	방위력개선	12	0	12	6,482	0	6,482
	소계	12	0	12	6,482	0	6,482
교육	유아및초등교육	5	0	5	0	0	0
	고등교육	39,906	0	39,906	34,546	0	34,546
	평생·직업교육	0	0	0	0	0	0
	교육일반	0	0	0	0	0	0
	소계	39,911	0	39,911	34,546	0	34,546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3,097	0	3,097	786	0	786
	문화재	790	0	790	1,379	0	1,379
	체육	6,931	72	7,003	7,668	0	7,668
	소계	10,818	72	10,890	9,833	0	9,833
환경	상하수도·수질	10	0	10	1	0	1
	자연	4	0	4	4	0	4
	해양환경	1,540	0	1,540	44	0	44
	환경일반	332	0	332	307	0	307
	소계	1,886	0	1,886	356	0	356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0	0	0	0	0	0
	취약계층지원	207	0	207	0	0	0
	보육·가족및여성	126	0	126	160	0	160
	노인·청소년	57	0	57	137	0	137
	노동	22,370	0	22,370	27,163	0	27,163
	보훈	3,689	0	3,689	11,931	0	11,931
	주택	0	0	0	0	0	0
	사회복지일반	1,476	0	1,476	3,135	0	3,135
	소계	27,925	0	27,925	42,526	0	42,526
보건	보건의료	30,642	0	30,642	36,594	0	36,594
	소계	30,642	0	30,642	36,594	0	36,594

<표 6>의 계속

분야	부문	2011			2012		
		감면	양여	합계	감면	양여	합계
농림수산	농업·농촌	7,410	0	7,410	7,681	0	7,681
	임업·산촌	8,304	0	8,304	11,815	0	11,815
	수산·어촌	0	13,655	13,655	0	2,261	2,261
	소계	15,715	13,655	29,369	19,496	2,261	21,75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무역 및 투자유치	40	0	40	0	0	0
	산업진흥·고도화	58,774	0	58,774	68,308	0	68,308
	에너지및자원개발	0	0	0	0	0	0
	소계	58,814	0	58,814	68,308	0	68,308
교통 및 물류	철도	143,181	0	143,181	220,989	0	220,989
	도시철도	0	0	0	0	0	0
	해운·항만	116,181	0	116,181	76,726	0	76,726
	항공·공항	27,028	0	27,028	36,857	0	36,857
	물류등기타	1,353	33,467	34,820	2,445	0	2,445
	소계	287,742	33,467	321,209	337,017	0	337,017
통신	방송통신	0	0	0	0	0	0
	우정	10	0	10	0	0	0
	소계	10	0	10	0	0	0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및도시	3	343	346	0	5,184	5,184
	산업단지	79	0	79	5	0	5
	소계	81	343	425	5	5,184	5,189
과학기술	기술개발	0	0	0	0	0	0
	과학기술연구지원	8,322	0	8,322	8,478	0	8,478
	과학기술일반	65	0	65	95	0	95
	소계	8,387	0	8,387	8,573	0	8,573
합계		508,871	48,388	557,259	597,405	7,445	604,850

II.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편제

1. 편제 설정

가. 편제 설정의 원칙

기본 원칙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예산서는 특례의 유형별로 분석한 보고서임
- 따라서 예산서는 사용료 감경, 사용료 면제, 양여 등 특례 유형별로 나눈 정보를 중심으로 편성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p>제10조(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p> <p>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용료 등의 감면,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세부 사항

- 상술한 기본 원칙에 따른 편제 설정시, 다시 아래의 세 가지 분류기준을 고려할 수 있음
 - ① 소관 부처별 분류
 - ② 기능별(재원의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 ③ 수혜대상에 따른 분류

1) 소관 부처별 분류

□ 부처별 분류의 정의

- 당해 법률의 소관 부처에 따른 분류와, 당해 국유재산의 소관 부처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나, 특례지출 근거법의 소관 부처에 따른 분류를 채택
 - 일부 특례지출의 경우, 당해 법률 소관 부처가 당해 국유재산 소관 부처와 상이하며, 이는 주로 국유재산 소관 부처가 국토교통부인 경우가 많기 때문
 -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작성의 목적이 정책목표 또는 수혜대상별 자원 배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목적은 당해 국유재산의 소유·관리 소관보다는 당해 법률의 취지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특례지출 근거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표 7> 부처별 특례 지출 실적(2012년)

(단위: 건, 백만원)

부처	특례지출 근거 법조항	특례유형					
		감면		양여		합계	
		건수	재정지원액	건수	재정지원액	건수	재정지원액
1. 경찰청	1	249	13,043	0	0	249	13,043
2. 고용노동부	5	241	27,163	0	0	241	27,163
3. 공정거래위원회	1	97	1,412	0	0	97	1,412
4. 교육부	17	385	37,914	5,137	2,617,058	5,522	2,654,972
5. 국가보훈처	7	108	11,931	0	0	108	11,931
6. 국무총리실	1	27	14,527	0	0	27	14,527
7. 국방부	4	13	6,482	0	0	13	6,482
8. 국토교통부	25	5,668	266,907	33	5,184	5,701	272,091
9. 국회	2	9	202	0	0	9	202
10. 금융위원회	3	0	0	0	0	0	0
11. 기상청	1	9	95	0	0	9	95
12. 기획재정부	1	26	445	0	0	26	445
13. 농림축산식품부	6	345	2,545	0	0	345	2,545
14. 농촌진흥청	1	48	5,136	0	0	48	5,136
15. 문화체육관광부	15	72	9,833	0	0	72	9,833
16. 미래창조과학부	16	34	1,422	0	0	34	1,422
17. 법무부	5	96	2,081	0	0	96	2,081
18. 보건복지부	16	48	38,178	0	0	48	38,178
19. 산림청	2	313	11,815	0	0	313	11,815
20. 산업통상자원부	23	509	43,482	0	0	509	43,482
21. 소방방재청	2	0	0	0	0	0	0
22. 안전행정부	9	5	314	0	0	5	314
23. 여성가족부	4	3	118	0	0	3	118
24. 외교부	2	23	3,801	0	0	23	3,801
25. 원자력안전위원회	1	35	0	0	0	35	0
26. 조달청	1	0	0	0	0	0	0
27. 중소기업청	8	1,137	24,826	0	0	1,137	24,826
28. 통일부	1	0	0	0	0	0	0
29. 특허청	1	0	0	0	0	0	0
30. 해양수산부	11	220	76,789	14	2,261	234	79,050
31. 환경부	3	16	312	0	0	16	312
합 계	195	9,736	600,773	5,184	2,624,503	15,049	3,225,276

주: 1. 법률 소관 부처는 2013년 정부조직을 기준으로 분류

2. 소관 부처가 복수인 경우 그 중 하나의 부처로 편입하였음. 농림부/식약처/해수부 소관 법률은 농림부로, 복지부/미래부/산자부 소관 법률은 복지부로, 안행부/국토부 소관 법률은 안행부로 편입되었음.

3. 국토해양부 소관의 법률은 국토교통부로 편입되었음.

-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편제는 동 예산서의 취지를 감안하여 기능별 분류를 위주로 하되, 소관부처별 분류도 제시할 필요
- 특례지출의 관리 및 책임성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개별 부처별 특례지출법의 수와 규모를 파악할 필요
 - 아울러 특례지출의 신설 및 폐지 현황 파악에 필요
 - 현재 정부조직과 업무분장이 대략적으로 예산과 유사하게 기능적 분류를 따르고 있으므로, 일차적으로는 특례지출법의 소관부처별 분류를 하고, 특례지출의 대상 사업 및 수혜자를 감안하여 세부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

2) 기능별(재원의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는 국유재산특례지출을 일반 세출예산의 분류와 마찬가지로 지원목적(정책목표)에 따라 분류한 정보를 제시해야 함
- 동 예산서의 작성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일반 예산서와 비교하여, 동일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지출의 형태로 투입된 재원과 일반 세출예산의 형태로 투입된 재원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임
 - ※ 유사한 취지로 작성되는 조세지출 형태의 지원 역시 감안할 필요
 - 특정 정책목표에 대해 투입된 총재원규모를 파악
 - 지원형태(일반, 국유재산특례지출, 조세지출)별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지원 형태 간에 규모의 적정 배분을 조정하는 데 활용 가능
 - 따라서 예산분류 항목에 따라 장(章)-관(款)을 설정하여 지출 분류함으로써 두 예산서와의 비교 가능성을 높임
 - 조세지출예산서는 이미 일반 세출예산서의 분류기준에 준하여 작성

3) 수혜대상의 유형에 따른 분류

□ 수혜대상에 따른 분류 검토

- 수혜대상에 따른 분류의 이론적 필요성은 여타 형태의 재원투입(일반 세출 예산, 조세지출)과 그 효과를 세부 비교할 때, 수혜대상의 특성(소득이나 다른 특성에 따른 사회계층 구분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임
- 일반 세출예산이나 특히 조세지출의 경우 재원투입이 특정 사회계층을 목표로 하거나 시행 결과 편중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정보파악이 중요
- 국유재산특례지출의 경우 이러한 필요성이 사실상 없으므로 수혜대상에 따른 분류는 편제 설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다만 기능별 분류의 세부조정시 반영될 수는 있으며, 추후 민간부문의 수혜규모가 대폭 증가할 경우 수혜대상에 따른 분류 추가를 재고할 수 있을 것임
 - 국유재산특례지출의 총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재원배분 조정 가능폭 자체가 크지 않으며, 이 중 약 80%가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 부문 재원투입 규모는 더더욱 미미
 - 다만 민간부문 수혜자 중 특정 기관이나 법인에 과도한 지원사례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이나, 이러한 작업은 수시로 별도 작업으로 수행하고 예산서 편제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여 설정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

2. 예산서 편제(안)

□ 예산서 편제 방식

- 예산서는 특례지출의 의의와 정의 등 특례지출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내용 수록
- 세부내역은 특례 지출의 유형으로 크게 구분

- 특례지출 근거 법조항과 그에 따른 특례지출의 수혜자, 재산유형, 예산 분류 및 각 연도 재정지원액이 포함됨
- 특례지출은 사용료의 감면 또는 양여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지원액을 기입
- 특례지출은 예산안 작성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당해연도, 차년도의 재정지원액을 표시
 - 3개년도 중 한 번 이상 재정지원 발생시 예산안 세부내역에 포함하여야 함
- 특례지출 근거법은 존재하고 있으나 실적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형별 내역에는 운영되고 있는 특례지출만 기입
- 총 195개 중 71개 법 조항만 재정지원 실적 발생(2012년 기준)
 - ※ “본문”에서는 제외. 다만, 부처별 분류 등 요약 자료에는 포함 가능하며, 현 회계연도까지는 실적이 없더라도 예산 회계연도에 실적이 있는 경우에 유의하여 작성

□ 예산서 편제

- I.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제도의 개요
 - 1.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제도의 의의
 - 2. 국유재산특례지출의 정의
 - 3. 국유재산특례지출의 범위
 - 4. 국유재산특례지출의 유형
 - 5.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제도의 특성
- II.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 1.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작성목적
 - 2. 국유재산특례지출규모 산정방법
- III. 국유재산특례지출 현황 및 분석
 - 1. 국유재산특례지출 현황
 - 2. 유형별 국유재산특례지출 내역
 - 3. 기능별(예산분류기준별) 국유재산특례지출 내역
- IV. 국유재산특례지출 유형별 내역
- V. 국유재산특례지출 기능별 내역
- VI. 국유재산특례 규정의 정비
 - 1. 국유재산특례 규정의 정비방안
 - 2. 국유재산특례 규정의 신설·폐지 내역
- <별첨>
 - 1. 재산 소관 부처별 국유재산특례지출 내역
 - 2. 수혜대상별 국유재산특례지출 내역
 - 3. 최근 5년간 미운용 국유재산특례 규정 내역

□ III-1 국유재산특례지출 현황

- 동 항목에는 각 연도의 특례지출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서술
 - 유형별, 부처별, 각 연도 총액 등을 포함

□ III-2 유형별 국유재산특례지출 내역 예시

(단위: 백만원, %)

특례 유형		2013년 실적	2014년 전망	2015년 계획
사용료 등의 감면	감경			
	면제			
	소계			
양여				
합 계				

□ III-3 기능별 국유재산특례지출 내역 예시

(단위: 백만원)

분야	부문	소관부처	근거법 조항	2013 실적	2014 계획	2015 전망
사회 복지	노동	고용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48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6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4조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5조			
	취약계층 지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17조			
...						

(단위: 백만원, %)

예산 분야	2013 실적	2014계획	2015전망
1. 일반공공행정			
2. 공공질서및안전			
3. 통일외교			
4. 국방			
5. 교육			
6. 문화및관광			
7. 환경			
8. 사회복지			
9. 농림수산			
10. 보건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2. 교통및물류			
13. 통신			
14. 국토및지역개발			
15. 과학기술			
합계			

□ IV 국유재산특례지출 유형별 내역 예시

1. 사용료 감면(면제)

1) 경찰청

(단위: 백만원)

번호	특례지출 내역		2013년 실적	2014년 전망	2015년 계획
1	근거규정	도로교통법 제132조	100	110	120
	수혜자	공공법인			
	대상재산	토지, 건물			
	예산분류	공공질서및안전(경찰)			
소계					

18) 보건복지부

(단위: 백만원)

번호	특례지출 내역		2013년 실적	2014년 전망	2015년 계획
1	근거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100	110	120
	수혜자	개인, 법인			
	대상재산	토지, 건물			
	예산분류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			
2	근거규정	아동복지법 제24조	200	500	1,000
	수혜자	법인, 개인			
	대상재산	토지, 건물			
	예산분류	사회복지(취약계층지원)			
3					
∴					
소계					

(단위: 백만원)

특례유형	2013년 실적	2014년 전망	2015년 계획
사용료 감면(면제) 합계	2,000,000	2,500,000	2,000,000

2. 사용료 감면(감경)

4) 교육부

(단위: 백만원)

번호	특례지출 내역		2013년 실적	2014년 전망	2015년 계획
1	근거규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2,000	3,000	4,000
	수혜자	개인, 공공법인			
	대상재산	토지			
	예산분류	교육(유아및초등교육)			
소계			2,000	3,000	4,000

18) 보건복지부

(단위: 백만원)

번호	특례지출 내역		2013년 실적	2014년 전망	2015년 계획
1	근거규정	모자보건법 제22조	2,000	3,000	4,000
	수혜자	법인			
	대상재산	토지, 건물, 기타			
	예산분류	사회복지(보육 가족 및 여성)			
2					
∴					
소계			55,000	55,000	55,000

(단위: 백만원)

특례유형	2013년 실적	2014년 전망	2015년 계획
사용료 감면(감경) 합계	100,000	300,000	200,000

3. 양여

8) 국토교통부

(단위: 백만원)

번호	특례지출 내역		2013년 실적	2014년 전망	2015년 계획
1	근거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	2,000	3,000	4,000
	수혜자	지자체			
	대상재산	토지			
	예산분류	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소계			2,000	3,000	4,000

15) 문화체육관광부

(단위: 백만원)

번호	특례지출 내역		2013년 실적	2014년 전망	2015년 계획
1	근거규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6조 및 제23조	2,000	3,000	4,000
	수혜자	지자체			
	대상재산	토지			
	예산분류	문화및관광(체육)			
소계			2,000	3,000	4,000

(단위: 백만원)

특례유형	2013년 실적	2014년 전망	2015년 계획
양여 합계	5,000,000	2,500,000	2,000,000

□ IV 국유재산특례지출 기능별 내역 예시(사회복지 분야)

8) 사회복지

8.1 기초생활보장

(단위: 백만원)

번호	특례지출 내역		특례유형	2013년 실적	2014년 전망	2015년 계획
1	근거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사용료 감경 사용료 면제 양여 소계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수혜자	비영리법인				
	재산유형	토지				
부문 소계			사용료 감경 사용료 면제 양여 소계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8.3 보육·가족 및 여성

(단위: 백만원)

번호	특례지출 내역		특례유형	2013년 실적	2014년 전망	2015년 계획
1	근거규정	모자보건법 제22조	사용료 감경 사용료 면제 양여 소계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수혜자	비영리법인				
	재산유형	토지, 건물				
부문 소계			사용료 감경 사용료 면제 양여 소계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8.4 노인·청소년

(단위: 백만원)

번호	특례지출 내역		특례유형	2013년 실적	2014년 전망	2015년 계획
1	근거규정	청소년기본법 57조	사용료 감경	0	0	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사용료 면제	100	100	100
	수혜자	비영리법인	양여	0	0	0
	재산유형	토지	소계	100	100	100
2	근거규정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용료 감경	0	0	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사용료 면제	400	400	400
	수혜자	비영리법인	양여	0	0	0
	재산유형	토지, 건물	소계	400	400	400
부문 소계			사용료 감경	0	0	0
			사용료 면제	500	500	500
			양여	0	0	0
			소계	500	500	500

8.5 노동

(단위: 백만원)

번호	특례지출 내역		특례유형	2013년 실적	2014년 전망	2015년 계획
1	근거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	사용료 감경	0	0	0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사용료 면제	1,000	1,000	1,000
	수혜자	공공부문법인	양여	0	0	0
	재산유형	토지, 건물, 기타	소계	1,000	1,000	1,000
2	근거규정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법 제14조	사용료 감경	0	0	0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사용료 면제	400	400	400
	수혜자	공공부문법인	양여	0	0	0
	재산유형	토지, 기타	소계	400	400	400
3	근거규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5조	사용료 감경	0	0	0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사용료 면제	400	400	400
	수혜자	공공부문법인	양여	0	0	0
	재산유형	토지, 건물, 기타	소계	400	400	400
부문 소계			사용료 감경	0	0	0
			사용료 면제	1,800	1,800	1,800
			양여	0	0	0
			소계	1,800	1,800	1,800

8.6 보훈

(단위: 백만원)

번호	특례지출 내역		특례유형	2013년 실적	2014년 전망	2015년 계획
1	근거규정	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법 제15조	사용료 감경 사용료 면제 양여 소계	0 200 0 200	0 200 0 200	0 200 0 200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수혜자	공공부문법인				
	재산유형	토지, 건물, 기타				
부문 소계			사용료 감경 사용료 면제 양여 소계	0 200 0 200	0 200 0 200	0 200 0 200

8.8 사회복지일반

(단위: 백만원)

번호	특례지출 내역		특례유형	2013년 실적	2014년 전망	2015년 계획
1	근거규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용료 감경 사용료 면제 양여 소계	0 100 500 600	0 100 500 600	0 100 500 600
	소관부처	법무부				
	수혜자	비영리법인				
	재산유형	토지, 건물				
2	근거규정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법 제13조	사용료 감경 사용료 면제 양여 소계	0 400 0 400	0 400 0 400	0 400 0 40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수혜자	공공부문법인				
	재산유형	토지, 건물				
부문 소계			사용료 감경 사용료 면제 양여 소계	0 500 500 1,000	0 500 500 1,000	0 500 500 1,000

(단위: 백만원)

분야	특례유형	2013년 실적	2014년 전망	2015년 계획
8. 사회복지 분야 소계	사용료 감경	0	0	0
	사용료 면제	3,200	3,200	3,200
	양여	500	500	500
	소계	3,700	3,700	3,700

▪

▪

▪

<이하 타 분야 특례지출예산도 동일 방식으로 제시>

▪

▪

▪

전 분야 국유재산특례지출	특례유형	2013년 실적	2014년 전망	2015년 계획
전 분야 총계 (1. 일반공공행정 ~ 16. 예비비)	사용료 감경	◇◇	◇◇	◇◇
	사용료 면제	x,xxx	x,xxx	x,xxx
	양여	○○○	○○○	○○○
	소계	△,△△△	△,△△△	△,△△△

□ 별첨 1 재산 소관 부처별 국유재산특례지출 내역 예시

1) 사용료 감면(감경)

(단위: 백만원)

재산 소관 부처	2013년 실적	2014년 전망	2015년 계획
경찰청			
고용노동부			
:			
합계			

2) 사용료 감면(면제)

(단위: 백만원)

재산 소관 부처	2013년 실적	2014년 전망	2015년 계획
경찰청			
고용노동부			
:			
합계			

3) 양여

(단위: 백만원)

재산 소관 부처	2013년 실적	2014년 전망	2015년 계획
경찰청			
고용노동부			
:			
합계			

4) 합계

(단위: 백만원)

재산 소관 부처	2013년 실적	2014년 전망	2015년 계획
경찰청			
고용노동부			
:			
합계			

□ 별첨 2 수혜대상별 부처별 국유재산특례지출 내역 예시

1) 사용료 감면(감경)

(단위: 백만원)

수혜대상		2013년 실적	2014년 전망	2015년 계획
공공부문	지자체			
	공공법인			
	소계			
민간부문	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개인			
	소계			
합계				

2) 사용료 감면(면제)

(단위: 백만원)

수혜대상		2013년 실적	2014년 전망	2015년 계획
공공부문	지자체			
	공공법인			
	소계			
민간부문	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개인			
	소계			
합계				

3) 양여

(단위: 백만원)

수혜대상		2013년 실적		2014년 전망		2015년 계획	
공공부문	지자체						
	공공법인						
	소계						
민간부문	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개인						
	소계						
합계							

4) 합계

(단위: 백만원)

수혜대상		2013년 실적		2014년 전망		2015년 계획	
공공부문	지자체						
	공공법인						
	소계						
민간부문	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개인						
	소계						
합계							

□ 별첨 3 최근 5년간 미운용 국유재산특례 규정 내역

번호	미운용 국유재산특례
1	공연법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2	정부법무공단법 제31조의2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	